

문서번호	안전치수과-1817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관리담당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김재운	최성연	윤석수	곽병한	02/04 김병환	
협 조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관리과장 종합생활안전담당		장용수 임철수 정택근 최태규 이승복 김호형		

2015년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2015. 2.

안전건설교통국
안 전 치 수 과

2015년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서울시 건설안전과-1194, 2015.01.27.)호

II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차원의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15.2.1 ~ 4.30)을 추진
-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인명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속한 보강조치로 사고 발생 사전예방 필요
-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III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 해빙기 위험시설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전략
 - 중점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상황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 총괄 및 조정- 상시연락체계 유지 및 재난정보 수집분석 전파- 관련기관 상호협업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 - 인명피해 위험시설 DB구축 - 담당책임자 지정 상시관리 - 관련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생활주변 위험요인 관리체계구축	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모니터링 - 재난징후정보센터와 연계한 위험요인 수집 - 전담반 운영을 통한 예찰활동 강화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	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강화 - 시민밀착형 홍보활동 지속 전개

IV

관 리 대 책

1. 추진목적

-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공사장, 축대, 옹벽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증가되므로, 선제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2.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국민안전처, '15.1.15.)

□ 추진내용

- 사전대비·대책기간 구분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자율점검, 민관합동점검) : '15.2.3.~ 3.31.
 -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기간 : '15.2.15.~ 3.31.
-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
 -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 등
 - 대상 유형별 5개소 이상 지정하여 점검완료하고 제출요망
 - 기동점검반(관련분야 전문가)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대책 마련
-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 '15.2.3.~2.10.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대시민 홍보 강화 - 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등

3. 세부 안전관리 추진 대책

□ 사전대비 · 대책기간 구분 운영

○ 사전대비 기간 : 2. 3. ~ 2. 14.

-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 구성 · 운영
- 인명피해 위험시설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 조사 및 책임자 지정
- 부서별 해빙기 비상연락망 제출 : 2.9까지(붙임1)
-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 : 2.9까지(붙임2)

○ 대책기간 : 2. 15. ~ 3. 31.

- 해빙기 전담관리팀 가동 및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관리 : 주1회 이상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추진기간(2.15~3.31) 중 평일 · 휴일 비상근무
 - 평일(재난총괄부서) : 해빙기 전담부서 비상근무 실시
 - 평일 야간과 휴일 (상황실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담당과장 책임 하에 비상근무조 편성 · 운영하여 상황발생 즉시 근무

- 해빙기 관련기관 담당부서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로 통제 등 시민이 긴급히 알아야 할 내용 위주의 재난상황 전파
 - 지역 유선방송, 아파트 방송, 전광판, 행정차량 등을 활용 대시민홍보 실시

○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 (최초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상황전파시스템, 서면 (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중간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

○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유형별 전수점검 및 지정

- 기 간 : '15. 2.9까지(지정현황 제출 전까지 점검 완료)
- 대 상 : 축대, 옹벽, 절개지, 터파기 공사장, 노후주택, 절개사면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 중인 시설 포함) 등

점검대상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축대·옹벽·석축·절개사면	노후 건축물 (공동주택, 공가 등)
관리부서	건축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등

- 지 정 : 재난위험시설(D·E급) 전체, 대상 유형별 5개소 이상
- 점검반 : 민관합동점검반(민간전문가, 시설관리부서 공무원 /총괄 안전총괄부서)

○ 위험(지정)시설 특별관리

- 관리대상 : 재난위험시설(D·E급 전체) 및 인명피해 위험 지정시설
- 전담지정 : 위험시설별 전담관리자 복수지정 (공무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 관리카드 작성, 순찰·점검 → 시설별 위험징후 사전 파악
- (평상시) 주 1회 이상 정기점검, 해당 지역별 위험도 사전 파악
- (비상시) ① 호우 예보시, 호우 종료 후 각 2회 수시점검
② 기온상승으로 지반융해 등 위험징후가 농후할 때

○ 적출사항 조치

- 현장대응 :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출입통제·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현장대응 활동 전개
- 조치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공사 등 대책 마련

□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신속대응팀 운용

-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기간(2.15~3.31) 중 붕괴 등 재난위험시설물 현장확인,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신속대응팀 운용
- 평일야간, 휴일 담장 및 절개지 붕괴시 출동하여 현장 응급조치하고 추후사고 예방

□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실시

- 기간 : '15. 1.28 ~ 2.10(대책기간 중 수시 교육 실시)
- 주관 : 발주처
- 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및 인·허가 공사장(민간공사 포함)의 현장소장, 감리원, 감독 등 안전관계자
- 내용 : 해빙기 주요 재해사례 및 취약공종 안전관리 대책

□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 안전점검의 날' (2.4, 3.4) 행사 시 전단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집중 홍보
- 동 주민센터 전광판,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
 - 구·동의 각종 회의시 해빙기 안전관리 및 사전 예방교육(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활용)
 - 반상회 등 소식지,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
 - 각종 전광판 등을 활용 지속 홍보
 - 특히, 해빙기 등산객 등반안전수칙, 하천, 호수 등 출입제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민 밀착형 홍보 병행
 - 홈페이지 안전소식란에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

V

행 정 사 항

□ 부서 공통사항

- 해빙기 비상연락망 정비 제출(붙임1, 2.9.까지)
-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점검(붙임3)

- 해빙기 안전사고 및 예방활동 추진실적 제출
- 해빙기 주간실적 제출(붙임6, 매주 목요일까지)
- 해빙기 기간 종료 후 최종실적 제출(붙임7, 3. 31까지)
- 소관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붙임5)
-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붙임2-1, 2.9까지)

□ 해빙기 안전대책 홍보

- 소식지(자치행정과), 구청 전자액자 등 홍보 : 안전치수과

- 붙임: 1. 해빙기 시·도 및 시·군·구 비상연락망 서식 1부.
 2-1.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 서식(엑셀) 1부.
 2-2.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 총괄 서식 1부.
 3. 인명피해 위험시설 관리카드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해빙기 사고발생 즉시 보고 서식 1부.
 6.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주간보고 서식 1부.
 7. 해빙기 안전대책 종합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8. 국민안전처 및 서울시 공문 각 1부. 끝.